#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32 발의연월일: 2025. 2. 13.

발 의 자: 박성훈 • 이인선 • 김성원

이헌승 · 김기웅 · 김승수

이달희 • 이상휘 • 박충권

백종헌 · 임이자 · 조배숙

김도읍 • 최은석 • 조은희

서지영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단의 사업으로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 · 훈련,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고, 이를 근거로 공단 소속 '보훈교육연구원'을 통해 일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, 실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보훈정책 개발이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 아닌 연수교육을 위탁해서 수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.

또한 연구직 인력이 동종 국책 연구기관 대비 10%에도 미치지 못하고, 정부 직접지원 예산 규모 역시 다른 유사 연구원이나 개발원과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, 이러한 기관이 미래 국가보훈을 위한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상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

산에 필요한 조사, 정책연구·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하고,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'보훈 정책 연구' 부분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삭제함으로써 사업내용을 정비하고자 함(안 제6조제6호 삭제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129호)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13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 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	제6조(사업)		
사업을 한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삭 제&gt;</u>	6.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		
	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		
	정책의 연구		
<u>7</u> . ~ <u>11</u> . (생 략)	<u>6</u> . ∼ <u>10</u> . (현행 제7호 ∼ 제11		
	호와 같음)		